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수도권 출·퇴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전세버스 노선운행 허용 관련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안내

1. 연합회 전세연 제2024-47(2024.03.29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연합회에서는 정부의 출·퇴근 교통혼잡 해소 정책 추진에 맞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세버스 투입운행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·추진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“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(안) 및 시·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(안)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.

4. 각 사에서는 금번 관련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적극 찬성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입법 예고법률 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※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402호, 교통서비스정책과

나. 입법 예고기간 : 2024.03.29. ~ 05.06

※2024년 5월 6일까지 의견 개진

※서전버조 대 24- 66호 (2024.04.02.)

다. 의견 등록 방법

1) **조합 홈페이지에서 [바로가기 클릭] 후 의견제진 할 수 있습니다.**

※ 공지사항 610번

2)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>) 접속 →

통합입법예고 중 “(부처)입법예고“ 클릭 후 입법예고명 검색에서

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” 검색 후 소관부처(공고번호) “국토교통부

제2024-402호“ 확인 후 의견 개진

※ 붙임 : 1) 전자관보 1부.

2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.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
이사장 오성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
(전결)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4-66호 (2024.04.02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